

2004 첫 번째
상담사례 연구분석

**‘열린 성소수자 상담,
어떻게 시작할까?’**

2004. 10



동성애자인권연대

2004 첫 번째
상담사례 연구분석

‘열린 성소수자 상담,
어떻게 시작할까?’

2004. 10



동성애자인권연대

2004 첫 번째 상담사례 연구분석

‘열린 성소수자 상담, 어떻게 시작할까?’

표지디자인 및 인쇄

— ‘인 기획’ — 강태성 디자이너

편집 — 동성애자인권연대

www.outpridekorea.com

펴낸일 — 2004년 10월 4일

펴낸곳 — 성 소수자 상담센터 (준)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11번지 5층

E Mail — queerkorea@empal.com

전화 — 02_778_9982 Fax — 02_775_9983

이 사업은 국가인권위원회의 “2004년도 인권단체 협력사업”에

선정되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인권회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

2004 첫 번째 상담사례 연구분석

‘열린 성소수자 상담, 어떻게 시작할까?’

<< 서두 - 특별한 의미 부여하기

<< code1. 성정체성

: 이경(동성애자인권연대 사무국장) / 허정은(서울여대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졸업)

<< code2. 커밍아웃

: 윤(동성애자인권연대 상담센터 준비팀)

<< code3. 범죄

: 이상희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윤

<< code4. 노동권

: 단영(동성애자인권연대 상담센터 준비팀)

<< code5 HIV/AIDS

: 이경, 단영, 송우 / 호재(에이즈인권모임 나누리+ 대표)

<< code6 청소년

: 동시신호(홍익대이반모임 / 성소수자 상담센터 준비팀)

<< code7 군대

: 윤(동성애자인권연대 상담센터 준비팀)

<< code8 트랜스젠더

: 송우(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성소수자 상담의 특별한 의미

특별한 의미 부여하기!

내가 이글을 쓰는 영광스러운(?) 자격을 얻게 된 것은 미모가 뛰어나서도 아니며, 그렇다고 글을 수준급으로 잘 써서도 아니다. 단지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다른 사람보다 많고, 그동안 상담센터 준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주어진 반갑지 않은 선물일 게다. 그 자격을 얻은 만큼 이 자료집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시작

사무실에 앉아 상담전화를 불들고 있는 것만큼 답답하고 신경쓰이는 일이 없는 것 같다. 대개 상담을 의뢰해 온 내담자들은 자신이 겪은 일을 털어놓으며 때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해결해주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사무실을 들어와 겁을 줄 것 같이 으름장을 놓기도 한다. 모든 상담의 경종을 따질 수 없지만, 상담을 듣고 나면 한동안 다음 일을 할 수 없을 만큼의 답답함이 몰려온다. 이유는 다양하다. 내가 어느 선까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왜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일들이 성소수자 개인들에게 일어날까에 대한 안타까움에서다. 또 현재의 법과 제도 안에서 전혀 해결해 줄 수 없는 경우는 그 이유를 내담자에게 설명하는 것조차 고통스럽다.

한편 많은 인터뷰를 접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성소수자들이 받는 구체적인 인권침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이다. 질문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때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 주어야 하는지 망설이게 된다. 법제도의 가시적 차별의 문제를 설명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도 있겠지만 망설이게 되는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성소수자 개개인들이 살아가며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글 내지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솔직히 정리한 글이 있다고 해서 인터뷰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 인터뷰를 위해서 위에 언급한 글모음이 필요한 것도 아니며 글모음이 있다한들 성소수자 개개인들이 겪는 일상적 차별을 해결해 주기 만무하다. 다만, 드러나지는 않고 있지만 개개인들이 겪고 있을 반복되고 일상적인 차별의 현실을 시시 때때로 폭로하며 그것을 정책화시키는 작업이 초벌적인 단계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뿐이다. 그 원인을 해갈하기 위한 그 첫 시작을 이 자료집 발간의 의미로 두려한다.

언어를 되찾고 스스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어느 책자에 읽었던 글이다.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알제리의 혁명가이자 정신과 의사였던 프란츠 파농은 알제리인들의 정신질환을 치료하며 흥미롭고 의미심장한 사실을 접한다. 정신질환의 정도가 심한 이들일수록 백인 우월하고 흑인은 열등하다는 이분법에 사로잡혀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즉 백인의 언어를 사용하고, 백인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알제리의 식민지 흑인들은 자신의 현존을 부정하고 백인의 가면을 쓰게 되는 신경증적 강박을 지니게 된다. 파농은 정신분열의 치료를 위해서는 고통받는 주체들이 언어를 되찾고 스스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난 이 글을 통해 - 이를 그대로 성소수자와 이성애자의 대결구도로 끌어와 100% 적용시킬 수는 없겠지만 많은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존재조차 드러낼 수 없는 사회현실 속에서 자신의 현존을 부정하며 이성애자로서 살아가도록 강요받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정신적인 피로함으로 고통받는 성소수자들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행동을 해야하는지 - 작은 교훈 하나를 얻을 수 있었다. ‘언어를 되찾고 스스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부재한 가운데 상담자로서의 나는 그 선에 서 있다. 나는 언어를 되찾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에게 던지는 여러 질문들은

여전히 명쾌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 답을 찾기 위한 행동과 고민은 가파른 상승선에 있는 진행형이라 마냥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아마, 이 자료의 목적도 그 고민 선상에서 동떨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유치한 code 구분이 실질적 정책이 되길 기대하며.

몇 개월 전으로 기억한다. 자료집 구성을 위한 회의자리에서 우리는 그동안 수집해오고, 상담해온 자료들을 테이블위해 짹 펴놓고, 유형별 구분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상담사례를 접하는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유형이 달랐고, 사례마다 얹혀있는 문제들이 많아 하나의 유형으로 뽑기에는 고난위의 능력(?)을 필요로 했다. 결국 우리가 선택한 것은 code였다. 개개인의 성소수자들에게 밀접하게 연관된 code를 꼽고 그 code에 가장 적합한 사례를 배열하는 방식이었다. 또한 사례를 나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례를 통해 느끼는 것과 앞으로 해결할 과제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했다. 무엇보다 이미 존재해왔지만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성소수자들의 실질적 차별들을 실례를 통해 더 가까이 접근하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다. code별 사례연구는 앞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부족한 code구분이 앞으로 친성소수자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소중한 기초 자료로 쓰이길 바란다.

을 (동성애자인권연대 성소수자 상담센터 준비팀)

- 이 자료집은 동성애자인권연대 / 성소수자 상담센터 준비팀이 함께 준비한 것입니다. 특히 글쓰기에 적극 동참해 주신 이경, 정은, 호재, 단영, 동시신호, 유키, 승우, 이상희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

#code 1. 성정체성

성소수자들의 정체성에 대한 열린 관점을 가지고 상담에 임하기

이 글은 성소수자 정체성(동성애/양성애/트랜스젠더로 한정함)과 관련하여, 상담원이 상담에 임할 때 지녀야 할 태도와 관점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어 쓰여졌다. 더 넓게는 성소수자들이 삶을 영위함에 있어 가장 근본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문제인 정체성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함께 풀어갈 수 있는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며, 어디서든 성소수자들을 다양한 문제로 만나게 될 모든 상담원들이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열린 관점과 감수성을 키우는데, 이글이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성 정체성 (Sexual Identity) 형성의 이해

성 정체성의 확립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동안 심리학과 정신 보건학이라는 분야에서 상당 부분 논의 된 바 있다. 하지만, 동성애자와 이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 젠더 이 모두의 성정체성의 확립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보여 진다. 이에 모든 이론적인 토대는 참고 사항이며,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상담에 임할 때는 내담자의 현재 심리상태와 성장배경, 사회적인 배경 등 많은 정보를 취합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온전한 이해에 가까워 질 수 있음을 상담을 기본으로 하여다 한다.

이에 성정체성 형성과 관련된 Cass(1979)와 Troiden(1989)의 이론들이 있으며, 이를 종합하여 보다 우리사회에 적합하게 이해한 여기동(2004)의 이론이 있다. 위의 세 이론을 바탕으로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정체성 형성의 제 1과제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이 이성애자와 다르게 같은 성에 정서적으로나 성적으로 이끌림을 느끼거나 자신의 성에 불편감을 갖게 되어 스스로 혼란스러울 수 있으며, 막연하게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 이 시기에 가장 개인 내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은 죄책감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정체성을 인식하는 단계이다. 인식하는 단계는 혼란의 단계에서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더 선명하게 느끼는 단계로 다양한 심리적인 역동이 존재한다. 이 시기에는 성적 지향을 확인하면서 사랑과 교감을 느끼게 되며 긍정적인 성적 지향성이 확립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사회와 가족에 대한 고립감과 죄책감 또는 자신의 성적 지향을 인정하면서 비롯되는 사회적으로 평범하지 않게 전개될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개인이 우울해 질 수 있으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이 가치관에 손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는 극단적으로 자살시도로도 이어 질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세 번째는 정체성 형성에 저항을 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여 지나, 정체성 인식이 건강하게 진행이 된다면 이 단계는 경미하게 지나갈 수 있다고 보여 진다. 하지만 내담자 개인에게 자신의 정체성이 자기혐오를 불러오거나 자신의 삶을 위협(원치 않은 아웃팅, 미래에 대한 불안감)한다고 느끼게 되면 정체성을 인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체성의 부인과 저항은 개인의 내적인 자존감을 떨어 뜨려 신체적인 증상과 우울과 자살을 수반하게 되기도 한다.

네 번째는 정체성을 수용하는 단계이다. 이 시기는 위에 모든 시기를 거쳐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인정하는데 보다 편안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자아상이 긍정적으로 발전되며 이러한 긍정적 자아상은 애정과 사랑에 의해서 더욱 더 강화 받게 된다. 자신에게 향해있던 죄책감과 수치심이 많이 감소하며, 성적 지향성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인간관계가 더욱 공고하게 발달 된다. 이와 더불어 이성애자에게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숨기며 생활하게 되기도 한다.

다섯 번째는 정체성에 대해 자긍을 갖는 단계이다. 이 시기에 개인에 매우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된다. 또한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만큼 성적 지향성이 같은 집단에 대한 애착이 형성이 되고, 사회적 편견으로 억압받는 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다. 이러한 개인 의지의 커밍아웃은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던 죄책감과 불안감을 소멸해 주는 동시에 자신이 가치를 더욱더 높여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종합해 보자면, 자신의 성적 정체성에 혼란을 겪으며 부인하는 단계를 지나면서 성적 정체성을 인정하고 주체적으로 확립하여 결과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동성애자와 이성애자를 비교한 연구에서 동성애자가 이성애자에 비해 더 우울하고 자살사고도 높으며, 정신건강상 취약하다는 모델은 성적 정체성이 건강하게 확립되는 않은 것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자긍심을 갖게 된다면, 개인 내적인 문제의 해결은 보다 수월해 질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 이르더라도 자신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 준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적 소수자들의 건강하고 긍정적인 성정체성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성정체성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1. 유연하게 생각하기.

가장 먼저 상담원이 가져야 할 태도는 유연함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서 다른 성정체성의 존재는 배제한 다분히 이성애 중심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다. 상담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경직된 사고의 틀을 깨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더불어 사소한 일상의 문제들에서 유연하게 체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내담자의 입장에서 모든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노력해보자.

2. 성정체성의 다양함을 존중하기.

성정체성을 고민하고 받아들임에 있어, 성소수자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은 무엇보다 자기 존중감을 높이는 것일 것이다. 사회에서 동성애적 정체성은 변태, 비정상, 질병처럼 여겨진다. 그래서 이들은 무작정 이 정체성을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을 하기도 하고, 정체성을 인정한 후에도 이를 ‘긍정’하게 되기까지는 또 오랜 시간이 걸린다. 성소수자 상담에 있어서, 상담원들은 성정체성의 다양함을 존중하고 내담자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결정을 우선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더불어 그 자신이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며, 성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은 자신을 더 알아가고 사랑하기 위한 과정임을 강조하면 좋을 것이다.

성정체성은 기본적으로 하나하나의 개인이 가지는 그만의 고유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정체성을 사고함에 있어서 중심도 개인이 되어야 하고, 성정체성과 그에 따른 성애, 사랑 또한 개인적인 문제이다. 하지만 이 사회에서 성정체성이 외부와 충돌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사적 영역조차 규격화된 사회적 잣대로 강제된다 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 같다. 이 사회는 기본적으로 이성애 중심적이기에 그렇다. 결혼과 가족도, 교육도, 인간관계도, 직장도,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에서 ‘동성애적 정체성’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다. 동성애는 그냥 ‘변태’일 뿐이다. 이로부터 성소수자들의 자기혐오가 시작된다. 잘못한 것도 없이 움츠려들고, 자신을 잃고, 죄책감을 느낀다. 비뚤어진 세상에 바로 서있다면 혼자만 비뚤어진 것으로 착각하게 되듯이, 우리는 이들에게 그 자신이 틀린 것이 아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이성애자 모두가 성소수자들을 적대하는 것으로 여겨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지지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많은 이성애자 친구들조차 적대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성애의 형태가 자유롭고 해방된 세상이라면 어떨지 생각하고 함께 상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한 세상에서는 굳이 이성애자와 동성애자들을 나누지 않고, 다양한 성과 사랑의 모습을 저마다의 다른 모습들로만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회의 잣대 애말로 부자연스럽고 차별적이라는 것을 서로 공감하게 된다면 좋을 것이다. 그로부터 우리는 성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아픔이 결코 혼자 감내해야 할 부분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으니 말이다. 나아가 이러한 과정들은 우리의 소중한 자유를 옹호하기 위한 것임을 마음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3. 동성애의 원인을 찾는 일이 필요한가?

지금까지 동성애적 정체성의 원인을 찾으려는 연구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아왔고, 실제로도 많은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 성정체성과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하는 내담자들은,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많은 혼란을 느끼고 있으며,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느껴지는 감정과 고민들 때문에 괴로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될 수 있다면 이성애자로 살아가려 한다거나 자신에게 무언가 동성애적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원인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한다. 상담원들도 일반적으로 동성애적 정체성이 발현되는 데에 무언가 특수한 원인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성정체성 상담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편견일 것이다. 왜냐하면 동성애 원인론은 근본적으로 동성애적 정체성을 비정상적, 병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릇된 시각을 바탕으로 하며, 동성애 정체성을 고쳐서, ‘정상적인’이성애 성정체성을 되찾아야 한다는 정말 잘못된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몇 가지 동성애 원인론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다.

1) 생물학적 원인론

유전설은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적 요인이 동성애적 지향을 결정하는가를 밝히기 위한 방법으로 주로 쌍둥이를 표집 집단으로 삼고 있다. 초기 연구에서 일란성 쌍둥이 중 한 쪽이 게이일 경우 다른 쪽도 게이일 경우가 이란성 쌍둥이보다 높은 경우가 많았으나, 표집집단이 좀 더 광범위해지자 그 차이도 점점 줄고 있다. 호르몬설은 일부 포유동물의 연구에서 호르몬 조작으로 이성적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이 가정은 게이는 여성적이며, 레즈비언은 남성적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의 호르몬 구성이 이성애자들과 전혀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게이에게 남성 호르몬(테스토스테론)을 주입한다고 해서 성행동의 유형이 바뀌지도 않았다. 뇌구조 연구에서는 동성애자들의 뇌의 구조가 이성애자들의 구조와 다르다는 것으로, 주로 뇌 구조물 중 시상하부에서 게이들이 이성애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 준다. 게이들의 경우 일반 남성 것보다 시상하부가 작고 여성의 크기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표집 모델이 에이즈나 범죄로 죽은 게이를 10명 안팎뿐이며, 레즈비언의 경우는 설명하고 있지 못

해 설득력이 약하다. 생물학적 원인론은 동성애 성정체성이 고유의 것으로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주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지만, 대상이 한정된 연구 이므로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거의 없다.

2) 정신분석학적 원인론

위와 같은 관점은, 일단 동성애가 정신질환보다는 인간의 성적 발달과정에서 어떤 정신적 외상으로 성적 기능이 변한 것이라 점을 강조한다. 프로이트는 인간은 원래 양성적 존재로 태어나는데, 동성애자들은 자라는 도중 부모와의 갈등과 가족의 상호작용이 잘못되어 동성애적 성향에 고착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동성애가 이성애보다 미숙한 형태의 성적 행위로 인지하며, 동성애의 원인을 가족관계에 두고 있다는데서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가족관계에서 어떤 형제들은 이성애자로, 또 다른 이는 동성애자로 자라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3) 학습이론적 원인론

동성애를 학습이론으로 설명하려는 입장은 동성애적 행위가 조건형성의 역할, 즉 동성파의 만족스러웠던 경험이나 이성파의 불만족스러웠던 경험이 동성애를 '선택'하게 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킨제이 학파들이 대표적 연구집단인데, 그들은 어릴 때의 의식적, 무의식적 성경험이나 기숙사, 교도소, 군대 등에서의 동성애적 경험이 동성애적 행동을 강화한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행동주의 이론가들은 동성애를 잘못 학습된 결과이므로 학습과 훈련으로 동성애가 교정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전기충격, 혐오연상 등의 치료법이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다하더라도 이 같은 요법으로 이성애로 전환했다는 사례는 없으며, 특수 환경에서 이루어진 동성애적 행위는 그 조건이 해제되면 원래의 성애지향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동성애자들보다 이성애자들이 사춘기 때 동료들과 동성애적 행위를 한 경우가 더 많으며, 레즈비언 중 남성으로부터 성폭행 당한 경험이 이성애 여성보다 많다는 연구도 있지만 이는 레즈비언이 된 원인보다는 레즈비언이 기 때문에 받은 결과일 경우가 높다.

한번 생각해보자. 어째서 이성애의 원인을 찾는 연구는 없을까? 그것은 이 사

회가 이성애는 당연한 것으로, 동성애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관점들은, 실제로 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바꾸거나, 동성애자들을 식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다만 내담자가 이러한 원인론들과 자신의 경험을 연결시켜 이야기 할 때, 이 둘을 구분지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어린 시절 받았던 성적 학대와 자신의 동성애적 성정체성을 연결시키는 경우, 위의 모델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필요하며, 성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이와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4. 성적지향은 단일하며, 고정불변의 것인가?

동성애적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은 100% 선택에 의해서 가능한 것도 아니고, 100% 운명적인 것도 아니다. 사실 동성애가 이 사회에서 가지는 특수한 의미가 없다면, 아마 사람들은 자신이 어째서 동성애자가 되었는지를 고민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이성애자들이 어째서 자신은 이성을 좋아하는지 전혀 고민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성적지향은 단일하며, 변하지 않는 것일까? 동성애자 커뮤니티에서는 과거에 이성을 사귀었던 사람들도 심심찮게 만날 수 있고, 양성 모두에게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다. 성정체성을 규정하기 위해 우리는 자신의 성적지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성적 지향은 특정한 성에게 성적, 감정적으로 관심이 향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여성과 남성 중 하나의 성에만 온전히 관심을 보이는 것이 성적 지향은 아니다. 이것은 관심의 정도로 표현하면 될 것 같다. 또한 어느 쪽에 상대적으로 더 끌리느냐의 문제로 보면 될 것 같다. 여성을 향해 성적지향을 가진다고 해서, 모든 남성들에게 관심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이 사회에는 양성애적 성적지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살아가며 양성 모두에게 호감을 느꼈던 사람들도 상당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성정체성을 자유롭게 사고하고 찾

아가는 과정은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의 일부이다. 이 과정이 최대한 자유롭고 외압 없이 진행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자.

5. 성관계/성행위 경험과 성정체성

동성과 성적 행위를 한 후, 상담을 요청해오는 경우가 많다. 동성과의 성관계나 성행위 경험을 가지게 된 사람들 전부가 자신의 성정체성을 다시 고민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이러한 경험은 개인에게 충분히 당혹스럽고 낯선 자신을 발견하게끔 하기도 한다. 한 내담자는 자신은 여자친구도 있고 섹스도 하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남자들과 섹스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다고 고민을 털어놓은 적 있다. 그는 자신이 바이섹슈얼인지를 궁금해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가 남성에게 성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끌린다는 것은 양성애적 성적지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혹은 한 때 상황에 따라 동성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미국의 예이지만, 킨제이보고서에서 보듯이 대다수의 남성들은 개인의 성적지향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며 동성과 성적 접촉을 하게 된다. 그런다고 그들 모두가 게이이거나 양성애자이지는 않다. 그러므로, 성관계나 성행위 경험이 전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살아가며 일어나는 성적 호기심과 호감이 언제나 일방만을 향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동성을 향한 지속적인 성적 호기심이나 호감이 단지 억눌러지거나 쳐내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성장과정에서 성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사랑을 경험할 때 비로소 자신의 성정체성을 다시 끄집어내어 볼 수 있듯이, 성경험과 성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자신의 성적지향을 극명하게 드러내어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이 가진 성경험이 더럽다거나 변태적이었다고 생각하게 해서는 안된다. 자연스럽고 누구에게나 필요한 과정임을 강조하자. 이러한 성경험이 정체성을 결정한다기 보다는, 성경험을 통해 자신의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을 자신이 더욱 고민하고 탐구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보자.

6. 트랜스젠더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관점

트랜스 젠더(trans-gender)는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 정체성을 지닌 이들을 총칭한다. 우리는 흔히 트랜스젠더는 상대성의 복장과 외모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트랜스젠더는 성전환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다른 성을 지향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므로, 외모나 복장으로 구분되어 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성 복장자를 두고 (drag- queen, king 또는 cross-dresser, trans vestite) 트랜스젠더와 동일시 하기도 쉬운데, 이성복장자는 기본적으로 성적 지향과는 관련이 없다. 이들 크로서 드레서나 트랜스 베타이트는 이성애자들일 경우도 많으며,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와 동일시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굳이 트랜스젠더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함을 제기하는 까닭은, 많은 사람들이 트랜스젠더 정체성에 대해 기본적인 부분조차 무지하기 때문이다.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성소수자 상담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랜스젠더 하리수에 대해 생각해보자. 하리수의 생물학적 성은 남성으로 태어났으되, 그녀 스스로 규정한 성별은 여성이다. 그러므로 그녀는 여성이다. 가끔 “영락없는 여자네, 진짜 여자 같네!”하면서 트랜스젠더들을 대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트랜스젠더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 것이다. 하리수는 남성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그렇다면 그녀의 성적지향은 이성애 지향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많이들 하는 착각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트랜스젠더가 남성을 사랑하는 것을, 남성 동성애자들과 동일하게 여기는 것이다. 남성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성별은 남자이며 동성에 대한 성적지향을 가지는 사람들로써 트랜스젠더와는 다르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여성에서 남성으로 전환했거나, 하고자 하는 트랜스젠더가 남성을 좋아한다면 그의 성별은 남성이고, 성적지향은 동성을 향하므로 동성애자인 것이다.

성정체성 상담의 구체적 접근 방법

1. 상담의 기본은 경청과 무조건적인 긍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상담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내담자가 과연 어떤 문제로 나에게 도움을 요청 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물론 전화하여 매우 직접적으로 묻기도 하고 상

담게시판에 단편적인 얘기만을 적기도 하지만 그게 내담자의 문제를 온전히 담고 있다고는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런 때 늘 시작머리에 두어야 하는 것이 경청과 긍정이다. 더욱이 성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내담자의 경우 상담자가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있을지, 혹은 자신의 비밀을 철저하게 지켜 줄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내담자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신뢰를 주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경청과 무조건적인 긍정이다. 다른 의미에서 이 기본은 또한 중요하다. 성정체성에 대한 상담을 하는 내담자는 매우 불안하고 고립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상담자가 충분히 자신을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의미에서 이 기본은 상담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해야 할 점이다.

2. 기본적인 성장배경과 가족환경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한다.

실례로 어릴 때 친부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아가 심한 성기 혐오로 레즈비언의 삶을 선택하여 살다 40이 넘어 이성애자와 결혼을 한 예가 있다. 이것은 '성적 정체성이 바뀔 수 있구나'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정신과적 문제와 성적 정체성 확립의 이해 과정이 맞물려서 어긋난 결과이다. 아주 드문 경우일 수도 있고, 이러한 성적인 학대와 혐오만으로 동성애자나, 양성애자, 트렌스 젠더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배경이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한 심리적인 치료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다른 상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성정체감 상담에서는 꼭 성장배경과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 성정체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에는 종교적인 문제나 보수적인 가족문화 등의 여타 문제들이 내재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걸림돌을 서로 이해하고 그 문제에 내담자를 직면 시키며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열쇠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3. 내담자가 갖고 있는 성정체성에 대한 편견을 존중해야 한다.

자신이 성정체성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이 가장 건강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개인이 그럴 수 있는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니라

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일반적인 교육을 받은 내담자라면 동성애에 대해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다. 그것이 설령 매우 틀린 지식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배려 깊게 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편견으로 인해서 자신의 성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이기 때문에 내담자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지식의 옳고 그름과 잘못된 편견은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내담자가 그러한 정보를 멀리해서 그릇된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만은 볼 수는 없다. 내담자는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그렇게라도 생각하고 자신을 이성애자의 삶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해하고 다가가는 것이 상담을 원만하게 진행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어떤 부분이 가장 내담자를 힘들게 하는지 알게 되면 그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단정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 지나치게 사회적인 모순과 제도적인 불평등이 더 소수를 약자로 만들고 있다는 것과 같은 설명은 성정체성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내담자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상담자가 성정체성 상담을 임할 때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중심을 잡고 설명하는 것에서 비추어 지게 하는 것이 좋다. 너무나 설명적인 장면은 상담에서 그리 바람직하지 못하다. 마지막 편견과 잘못된 지식을 버릴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늘 내담자의 몫으로 돌려야 후에 스스로에 대한 자아 존중감을 높일 수 있다. 그러한 기회를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

4. 성정체성의 혼란이 온 구체적인 시기와 시초 사건에 주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동성에 대한 이끌림, 이성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성적인 접촉에 의해 자신이 동성애자인가 라고 고민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좀더 상세하게 기술하게 하면 그 안에 답이 있는 경우가 많다. 우선은 '동성을 좋아하고 있는데 내가 동성애자 일까요?'라는 질문은 '내가 동성애자이면 어떻게 하나'에 대한 불안이 잠재되어 있을 수 있다. 혹은 '동성과 성관계/성적인 접촉을 했는데 그럼 동성애자가 되는 건가요?'라는 질문은 성적인 기호인지 아니면 정서적으로 이끌림이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재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상황에서 그러한 일이 있어났는지, 또는 그 당시에 기분과 상대에 대한 느

낌은 어떠한지 그 일이 있은 후에 자신에 대한 느낌은 어떤지 등 구체적인 질문들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고 누군가와 성관계를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임을 이야기 해주는 것이다. 동성에게 이끌리고, 동성과 성관계를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마음과 몸이 향한다는 것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인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여 진다.

5. 내담자의 혼란에 대해 판단을 하기보다는 함께 혼란을 겪어 주자.

위에 언급한 여러 접근 방법에 다 적용이 되는 부분이다. 내담자는 혼란스럽기 때문에 상담을 하는 것이다. 물론 성정체성 형성을 많은 혼란을 겪지 않고 확립한 동성애자도 있고,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개인도 있지만, 현재 성정체성 상담을 원하는 내담자는 그냥 혼란스러울 뿐이다. 매우 불안하고 두렵고 자신만 유독 희한한 병에 걸린 사람처럼 막막함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다. 상담자가 '당신은 동성애자다' 아니면 '이성애자다'라고 얘기해 주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함께 혼란의 중앙으로 용감하게 들어가길 권해드리고 싶다. 혼란의 한가운데서 앞서 말한 여러 접근방법과 함께 얼마나 혼란해 하고 있는지 내담자의 자리에서 생각하고 내담자의 입장에서 그 혼란을 뚫고 나올 방법을 서로 모색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명하고 올바른 지식을 담아내는 말보다 진심어린 '정말 힘들겠어요'라는 말이 내담자에게 더 공감을 실어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6. 원하는 정보는 성의껏 하지만 정도껏.

정체성 혼란을 겪다 보면 나와 같은 이들이 정말 많을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을 하게 된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경우는 자신의 성정체성이 거의 확립이 되어 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동성애자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어디가면 많이 만날 수 있다'라는 답보다는 내담자 스스로 자신이 속할 수

있는 모임이나 집단을 찾게 도와주는 것이 좋다. 단체가 큰 모임이 힘들다면 취미를 함께하거나 할 수 있는 일상의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모임들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동성애자들과 소통하게 해서 자신과 같은 성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과의 연대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ps. 허정은¹⁾씨가 상담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글.

모든 상담 장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내담자가 최우선 이라는 것입니다. 상담자의 입장에서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울 수 있지만, 내담자는 그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서로 진실하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바탕은 humanism과 인간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가장 효과적인 상담접근 방법 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담자를 많이 격려 해주시고 많이 칭찬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담자의 힘을 믿고 그리고 그 내담자가 도움을 청한 그 용기에 찬사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언급된 성정체성에 대한 여러 관점들과 더불어 상담적인 장면에서의 접근방법이 앞으로 있을 성정체성 상담에 미흡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기본적인 자유와 사적 영역의 제재와 억압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과 지치지 않는 감시의 눈길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서울여대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였으며, '동성애관련 스트레스 및 우울과 동성애자의 자살생각간의 관계'에 관한 석사논문을 작성하였다. 또한 성소수자 상담원 1기 교육과정을 수료한 분이다.

#code 2. 커밍아웃

얼마 전 2000년 커밍아웃으로 사회 큰 파장을 몰고 왔던 홍석천씨가 타임지가 선정한 아시아 20대 영웅에 포함되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사건이 있은 지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타임지는 홍석천씨의 용기있는 행동이 사회의 금기를 깨고 소수자 권익을 신장시키며, 사회변화에 한 몫을 했던 것, 더불어 많은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긍정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한국의 열악한 성소수자 인권 현실을 생각한다면, 타임지는 평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당시 그의 커밍아웃은 동성애자 인권을 지지하는 많은 지지층을 확보할 수 있게 한 좋은 기회였을 뿐만 아니라, '커밍아웃'이라는 용어 자체가 널리 알려지면서 '동성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언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무엇보다 성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교육조차 받아보지 못한 많은 성소수자들에게 부려온 그 이상의 용기를 주었기 때문에 그의 커밍아웃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그의 커밍아웃이 낳은 고통 - 직장에서의 해고, 가족과 융화되지 못하는 어려움 등 - 또한 많은 성소수자들이 공감하고 있는 아픔과 현실이기에 커밍아웃은 결코 쉽지 않은 '행동'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comming out of the closet

커밍아웃의 사전적 의미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검색만해도 -충분하지 않지만- 그 의미를 쉽게 찾을 수 있고,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복되지만, 그 의미를 다시 짚고 넘어 가자면 커밍아웃은 comming out of the closet의 준말로 “벽장으로부터 나오다” “자신의 성정체성(sexual identity)을 긍정하고 나아가 타인에게 드러내는 일”을 말한다. 하지만, 단지 몇 줄의 설명으로 커밍아웃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협소한 의미로서의 커밍아웃은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닳아가는 과정, 타인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과정 속에서의 고통 내지 어려움 등을 배제하고 있어 커밍아웃의 의미를 좀 더 세밀히 볼 필요가 있다.

먼저 ‘벽장으로부터 나오다’라는 의미를 단지 ‘타인에게 드러낸다’라는 의미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벽장이라는 의미를 넓게는 사회통념²⁾ 내지 이성애중심주의³⁾로 표현될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마다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다양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즉 끊임없이 자신이 성정체성을 고민하며 옳고 그름을 수없이 판단하고 있는 성소수자들에게는 고민하는 순간순간이 벽장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자기 자신에 한정되어있다는 폐쇄성을 벗어나 같은 정체성을 가진 친구를 만난다거나, 그 모임에 참여하고자 하는 성소수자들에게는 만나러가는 그 과정 - 두려움 내지 설레임 - 역시 벽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긴 채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는 과정, 자신이 동성과 첫 성경험을 한 것 내지 게이(레즈비언)바 등을 처음 접한다던가, 단체(모임) 행사에 참석하는 것 등 모두 커밍아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자신이 긍정한 만큼 성정체성을 친구, 가족 등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2) 여기서 ‘사회통념’이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를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 갓대로 바라보고자 하는 호모포비아적인 사회 분위기, 시스템을 말한다.

3) 이성애 중심주의는 단순히 이성간의 사랑으로만 국한시킬 수 없으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성애자는 가정 아래 생식위주의 성역할을 강조 내지 강요로 인해 이성애적인 것 이외 모든 것을 비정상적으로 치부하고 혐오하는 것을 말한다. (한채윤, “성적소수자 차별의 본질과 실제 그리고 해소방안”, 성소수자 인권, 2002, 사람생각)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노력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집단적 드러내기를 감행(?)하는 행위⁴⁾ 역시 중요한 커밍아웃으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다. 개개인의 성소수자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시키고 그것을 인권 운동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커밍아웃은 그 자체만으로 ‘다시 시작’이라는 지속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인 만큼 자신이 속한 집단, 사람관계는 자신이 나이가 든 만큼 넓어지고, 다양해지기 마련이다. 이는 성지향(sexual orientation)과 무관하기에 성소수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 드러내기를 통해 우호적인 사람 내지 집단을 만났다하더라도, 또 다른 문화, 환경을 접할 때마다 당사자는 되풀이되는 고민과 압력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커밍아웃은 때로 단계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커밍아웃으로 스스로 성소수자임을 인정하는 단계를 말한다. 이것은 다음 단계를 위한 기본자세이기도 하다. 이 단계에서는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고민하고 찾아가는 과정이 포함된다.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는다던가, 같은 성정체성을 가진 동료, 친구들을 만나는 과정 등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을 것이며 셀 수 없을 만큼의 갈등과 대질의 단계이기도 하다. 최종적으로는 자신이 전혀 비정상적인 존재가 아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긍정한다. 다음 단계로 가족, 친구 등 자기와 관계 맺고 있는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의 성정체성을 공개함으로써 pride를 가진 만큼의 존재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아마 많은 성소수자들은 사회의 벽을 실감할 것이다. 커밍아웃의 준비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가족 친구 직장동료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단계를 극복한다면,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기댄 공적 커밍아웃 내지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한 자신감을 좀 더 확고히 할 수 있다.

4) 한국사회에서 동성애자들의 집단적 드러내기의 역사는 짧다. 97년 노동법, 안기부법에 반대하는 동성애자 연대투쟁위원회가 건설되면서 시작되었으며, 2004년 현재까지 다양한 쟁점에 동성애자 상징으로 일컬어지는 ‘무지개’ 깃발을 들고 참여하고 있다.

커밍아웃은 성소수자가 자신의 성정체성을 긍정하고 표현하는 행위로서의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성정체성을 찾아가며 겪게 되는 대질과 동요의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배제해서는 안된다. 또 '나 동성애자야, 나 트랜스젠더야'라고 누군가에게 일회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며, 한순간의 일이 아닌 계속적으로 요구되어 지는 물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커밍아웃은 성소수자에게 끊임없이 제기되어지는 영속적인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⁵⁾

상담을 통해 본 커밍아웃.

◆ 내담자가 가족, 친구 등 주변인일 경우

<사례1, 동성애자인권연대 전화 상담사례 중>

내담자는 40대 남성으로 남동생이 자신에게 '제이'라고 자신에게 커밍아웃을 한 상태였으며, 교제 중인 사람까지 소개받은 상황이다. 상담의 주 내용은 이미 결혼까지 했던(현재는 이혼한 상태) 동생이 30대 후반에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한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대개 청소년기에 그런 느낌이 오지 않는가? 또 교제 중인 사람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인상, 말투 모든 면에서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하며 다시 예전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자신의 생각과 함께 성정체성이 바뀔 수 없는지에 대한 상담이었다.

<사례2, 동성애자인권연대 전화 상담사례 중>

내담자는 결혼한 커플로 임신 7개월에 접어든 주부이다. 상담의 주 내용은 남편이 결혼을 한 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잦은 외박을 해, 왜 그럴까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었다. 특히 집에서 사용한 컴퓨터에 동성애사이트를 접속한 기록이 있어 그 의심은 더했다고 한다. 하지만, 결혼한 사람이기에 설마 그럴까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할 얘기가 있다더니 자신이 제이라고 커밍아웃을 하였고, 허탈한 나머지 눈물만 나왔다고 했다. 지금은 서로 대화를 하지 않은 상황이고,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지금의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해 영향을 줄까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에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처럼 모르겠다는 상담이었다.

5) 서동진 <당대비평 13호 '커밍아웃의 정치학을 다시 생각한다.'> 삼인 351-360p를 참고하였다.

내담자가 가족, 친구 등 커밍아웃한 당사자가 아닌 경우가 있다. 이들 대부분은 자신과 가까이 있는 사람의 갑작스런 커밍아웃을 인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관련 정보 등을 얻고자 한다. 좀 더 밀접한 관계 - <사례2>와 같이 결혼한 배우자가 커밍아웃을 한 경우 - 에 있을 경우에는 극도의 심리적 불안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사례1>과 같이 성정체성 형성기에 대해 물어본다던가, 자신의 바램 정도를 언급한다면 내담자의 입장에서 충분한 공감을 이루며 상담에 응할 수도 있겠지만, <사례2>의 경우처럼 기혼동성애자의 배우자의 상담의 경우는 난감하기 그지없다.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동성애에 관한 '정보'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해자체를 못하거나, 이해를 하더라도 이미 다 커버린 자식에게 피해가 갈까 전전긍긍하기도 한다. 자신의 성정체성을 긍정하고 상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당사자의 심리와는 다르게, 내담자는 그동안 받아온 교육과 경험에서 '동성애' '성소수자'와 같은 용어는 옳지 못하거나 비정상적인 행위쯤으로 여겨왔었기에 불안감 내지 걱정을 갖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우선 그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을 만큼 상대의 고민에 경청하고 공감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심리적 불안함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내담자 대부분은 자신에게 벌어진 일들을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답을 얻고 싶어 하지만, 대화 상대를 찾는 것조차 쉽지 않았을 것이고, 설사 찾았다하더라도 부정적인 견해만을 듣는다면 내담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미 내담자는 자신이 가진 상식만으로도 충분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고민하고 안정 시킬 수 있는 지지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상담자는 공감과 경청에 그쳐서는 안 된다. 당사자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치부'로 여겨질 수도 있는 성정체성을 왜 당신에게 알리려했는지 되물어야 한다. 왜 당신이었을까 하는 물음은 내담자로 하여금 생각의 여유를 줄 수 있다. 물론 <사례2>의 경우는 다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설불리 답을 내려 애쓰는 것보다, 결혼 전후의 여러 상황에 대해 긴 시간을 갖고 들을 필요가 있을 것이며, 내담자의 입장에서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게다.

마지막으로 내담자가 상담 후 당사자에게 취해야 하는 태도에 대해 답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오'라는 일방적 언급보다 상담내용을 정리해가며 내담자와 같이 답을 찾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것은 내담자가 취하는 태도에 따라 당사자는 지지자를 확보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커밍아웃이 개인에게 있어 영속적인 과정인 만큼 내담자의 태도가 부정적일 경우 당사자가 이후 겪게 되는 아픔에 대해 미리 공감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필수적인 단계이기도 하다.

◆ 당사자일 경우

<사례1, 동성애자인권연대 전화 상담사례 중>

17살의 청소년 동성애자다. 청소년 동성애자 커뮤니티, 동성애자인권단체에서 활동하며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긍정하고 있는 친구이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커밍아웃을 한 뒤 어머니께서 자신의 핸드폰을 빼앗아 들고 핸드폰에 입력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되었다'며 고함을 치는 등 그의 행동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고 따라다닌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담이었다.

<사례2, 이반시티 온라인 상담사례 중>

이제 20대 중반 넘어서는 게이이다. 이성애자친구들이야 전부다 결혼이다 여자친구다 많이들 생각할 때인데요. 가끔 친구들이랑 술 먹고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넌 왜 여자친구 안 만들어..? 왜 여자에게 관심 없어..? 가끔 애인한테 전화나 문자라도 올 때면.. 조심해서 받기야 하지만.. 누구야? 누군데 그래? 너 무나더 나의 사생활에 빤힐 친구들은 집요하게 캐물곤하는데.. 이제 돌려 말하는 것도 말도 안대는 평계되면서 넘어가는 것도.. 힘이 드네요.. 전에도 물론 커밍아웃을 생각을 안해 본 것은 아니지만.. 일반인에게 물론 베스트 프렌드 이긴 하지만.. 이반이 아니기에 이해하는 척 하긴 하여도.. 실제로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결혼 이야기.. 여자친구 이야기를 할 때면.. 차라리 말해버리고 시원하게 살아나갈까 싶기도 하지만.. 조금은 두렵습니다.. 지금 가지의 친구들이 다시는 저를 일반사람처럼 보지 않을테니까요.. 그렇다고 사람

하는데 있어 친구들만큼 중요한 존재도 없다고 보는데.. 그 친구들과 의절하고 혼자 살아 갈 자신은 더욱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 게 좋을지

커밍아웃은 '자신감' '자신에 대한 긍정' '존재의 표현' 등 밝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준비 없이 이루어질 경우 - 설부른 커밍아웃으로 인해 - 가족, 친구로부터 따가운 시선과 외면을 받거나 심지어 심리적, 경제적인 제약이 가해지기도 한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경우 사회적으로 독립된 존재로 인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커밍아웃은 존재의 의미 자체를 상실하게끔 하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즉 <사례1>과 같이 함께 이해하려는 노력보다, 무조건적인 부정이 앞서 더 상처가 되는 폭력으로 되돌아오기도 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시스템이 전혀 만들어져 있지 않다. 국가는 '청소년 보호'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지만, 보호의 대상 속에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없으며, 오히려 동성애, 성소수자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조차 청소년보호라는 미명아래 불가능하게끔 호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들을 사회 밖으로 내치며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는 '자살'이라는 극단의 방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위한 사회적 보호망⁶⁾을 만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을 위한 조언⁷⁾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사례2>와 같이 결혼 적령기의 성소수자들의 경우 주변사람들로부터 받는 지나친 결혼압력으로 인해 '커밍아웃'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는 것도 현실이며, 설사 자신이 존재하는 의미 자체를 인정받고자 하더라도 그 자체가 자신에게 폭력으로 되돌아오지는 않을까?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을 수반하기도 한다. 그만큼 커밍아웃이 한 개인의 침범할 수 없는 실존의 문제이자 당사

6) 가족, 학교 등 자신을 둘러싼 공간에서 배제된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위협에서 보호할 수 있는 의료, 복지적 시스템을 말하며, 그들이 자신이 속한 공간으로 되돌아 갈 수 있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7) 위계질서 속에서의 권위적 지시는 지양해야 하며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거나, 서로의 경험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인터넷매체라던지, 오프라인 모임)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자와 가족, 한 개인과 사회를 아우르는 관계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것은 시기, 장소와 무관하게 커밍아웃을 해야 할 상황이 충분히 닥칠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기 때문에 자기방어를 위해서라도 커밍아웃을 준비해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커밍아웃을 함께 준비해나가는 차원에서 몇 가지 제언을 하며 마치고자 한다. 앞에서도 강조하였지만, 커밍아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임과 동시에 자기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소통이다. 때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과 폭력이 수반되기도 하는 등 꼭 해야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하기도 한다. 커밍아웃의 출발은 개인이기에 그 누구도 강요할 수 없으며 스스로도 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다. 하지만 많은 성소수자들은 자신을 부정하며 사는 것에 도전장을 내밀고 싶어 하며, 그 용기는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 경험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성소수자들에게 충분히 자신감을 불어넣어줄 수 있다. 커밍아웃은 한 개인에게 요구되어지는 끝없는 물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와 관계 맺는 것들이 변화하는 만큼 그 물음은 많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물음의 경중이 항상 같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어떻게 커밍아웃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답은 없다. 단지 이후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기에 많이 보고, 듣고, 묻고, 상상한 만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묻자!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긍정하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 커밍아웃을 할 준비가 되어있는지에 대한 물음이며, 무엇보다 솔직함, 자신감이 겸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나를 둘러싼 주변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있는지, 즉 성소수자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암시성 물음을 주면서 커밍아웃을 해도 되는 대상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신의 우군을 계속 만들어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보고 듣자!

다른 성소수자들의 경험을 인터넷매체를 통해 보고, 들을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 그대로 반복될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도움이 된다. 또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필요가 있다. 커밍아웃은 얘기치 않는 물음을 수반한다. ‘바뀔 수는 없는건지’ ‘원인이 무엇인지’ ‘에이즈와는 무관한지’ 등등 무수히 받아왔던 질문이 반복되지만, 명쾌한 답을 주기위해 스스로 정리하고 예비답안(?)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상상하자!

커밍아웃 이후의 반응은 다양하다.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어 있지 않을 때나, 우발적인 커밍아웃은 인간관계를 파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기반(가족구성원에서의 배제, 직장에서의 해고, 유엔난민 고등판무관실이 정하는 난민 등)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런 반응과 결과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상상할 필요가 있다. 상상력에 따라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인생설계를 동반할 수 있을 것이며 당황하거나, 위험한 정도도 적어질 수 있다.

자료집을 읽는 이성애자들을 위한 Tip.

내 친구, 가족이 동성애자라고 할 때⁸⁾

동성애자가 자신의 성적 성향을 주위의 친구나 가족들에게 알리는 것을 흔히 '커밍아웃'이라고 한다. '커밍아웃'은 벽장으로부터 나온다는 의미로 오랫동안 벽장 속에 숨어지내다 자기 자신의 동성애적인 면을 꺼내어 '내게 이런 면이 있어...'하며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보통 사람에게 친구나 가족이 커밍아웃하게 되면, 그 친구나 가족이 얼마나 큰 용기를 가지고 커밍아웃을 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보다는 황당해하거나 자신도 동성애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앞으로 자기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더욱 초점을 두게 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여러 이유에서 동성애자 친구를 갖는다는 것은 자신에게 부담이라기보다 오히려 이점이 될 수도 있다. 주위의 가까운 사람이 커밍아웃을 할 경우에 대비해서 너무 황당해 하지 않고, 커밍아웃을 한 친구나 가족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좋은 것들을 열거해 보고자 한다.

1. 우선 축하해 주자

나름대로 자기 자신 속에 사랑의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다. 굳이 이성애자가 되기 싫다던가, 동성애자가 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에게 사랑의 감정, 성적 매력을 느꼈는데, 그 대상이 단지 같은 동성이라는 점만 이해하면 된다. 물론 동성애자로 이 사회를 산다는 것이 비정상, 변태 등의 다양한 수식어가 붙는 것이 현실이고, 당신 또한 동의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모든 것을 배제하고 성정체성을 찾는 힘든 과정을 극복하고 긍정했다라는 점을 우선 축하해주는 것이 좋다.

2. 당신에게 커밍아웃을 할 정도로 당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고맙다는 말을 하자.

8) 이 글은 하이텔 '또 하나의 사랑' 게시판 추천글에 기고한 joycity님의 글을 재구성하였다.

동성애자들도 주위의 가까운 사람들과 자신의 내면의 생각이나 느낌을 같이 나누고 싶어한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 친구, 가까운 가족에게는 특히 더 그런 감정이 들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없이 지내며 친하게 사귀어 왔던 가까운 사람에게 자신의 성지향을 비밀로 남긴다는 것은 인간관계가 무의미하게 느껴지기에 커밍아웃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이다. 물론 크나큰 위험부담을 안고 말하게 되지만, 그만큼 신뢰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이다. 그 우정과 신뢰에 대해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다.

3. 사랑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물어보자

현재 사랑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물어 보신다거나, 현재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최근 상황에 대해 물어보는 것도 좋다. 피상적인 관심에서가 아니라 커밍아웃을 하는 사람 전체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물어 보는 것도 좋다.

4. 서로 계속 연락을 하자

커밍아웃을 하게 되면 마치 무슨 큰 죄라도 고백한 양, 상대의 판단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에 무척 불안해지기도 하며, 연락을 잘 안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연락을 안하더라도 혹시 멀어진 건 아닐까 하는 조바심에 상대의 반응에 예민해지기 마련이다. 커밍아웃은 사랑고백과는 차원이 다르다. 지금까지의 인간관계에 대한 '재신임' 같은 면이 크다. 좀 더 사랑해 달라는 뜻이 아닌 서로의 전인격에 대해 가림없이 지내고 싶다는 튼튼한 우정을 기대하는 것이다. 혹시 연락이 없다면 먼저 연락을 하자.

5. 이 사회에서 동성애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상상해 보자

편견이 없는 사회라면 동성애자라는 명칭 자체가 없었을 것이며 커밍아웃을 하며 오랜 세월 애써 가꿔 온 우정을 위태롭게 하거나 피를 나눈 가족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동성애자인권연대에는 간혹 상상하기 힘들고, 눈물이 흥 돌 정도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의 상담이 오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떳하고 당당하려는 동성애자들이 보기 좋은 것은 사실이다. 눈물을 쑥 닦고 '괜찮아'하며 '너에게 큰 힘이 되줄께'라고 말한다면, 상대에게 그 어느 것보다 큰 힘이 될 것이다.

6. '날 사랑하는 것은 아니가'와 같은 의심이나 '날 사랑한 적은 있어?' 와 같은 질문은 삼가자.

당사자들은 커밍아웃 자체가 무척 힘든 일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솔직한 대화를 통해 당신 자신의 이성애적 성향도 그에게 이해받고 존중받기를 요구하면 좋다. 보통 남자의 경우 다른 남자가 자신을 좋아한다면, 자기를 여성으로 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단지 자신의 남성성이 도전받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하지만 대개 남성 동성애자가 같은 동성에게 성적 매력을 느낀다는 것은 상대를 여성으로 생각해서가 아니다. 이성간에도 여자이기 때문에, 혹은 남자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멋있는 점, 매력 포인트 등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듯이 동성애자들도 마찬가지일 뿐이다.

7. 비밀을 지키자.

커밍아웃은 자기 자신의 일생을 걸고 하는 것이다. 커밍아웃을 해서 상대가 받아 주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일생이 바뀔 수도 있다. 아직 사회의 편견의 벽이 높기에 어떤 이유로든 당신 자신이 친구의 커밍아웃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해도 당신 자신의 선에서 비밀을 지켜 주어야 한다. 그 친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당신에 대한 전인격적인 신뢰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8. 친근한 표현을 하자.

혹시나 하는 우려감에 친근감을 주저할 필요는 없다. 자신을 인정하듯 이성애자들의 성향도 중요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여태까지 보여주었던 친근감을 계속 보여주면 된다.

#code 3.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①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②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토지, 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③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규정함으로써, 동성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하여 유일하게 동성애를 명시적으로 차별했던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상의 유해매체물 기준(‘동성애’를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기준으로 명시하였다)이 개정(동성애 기준을 삭제함)됨에 따라, 현행 법 제도상 동성애를 명시적으로 차별하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일상에서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사실상의 차별이나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따돌림, 명예훼손, 모욕, 해고파면 등의 징계, 부당행위, 투서, 폭행, 협박 등을 말할 수 있겠다. 범죄라 함은 사회적 의미로 형벌을 받게 되는 행위이고 법률적으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성과 책임성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 성소수자들에게 있어 ‘범죄’의 문제는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에 범죄의 구성요건을 따지는 것을 넘어 왜 성소수자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탐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성소수자의 성정체성을 밝혀짐으로써 벌어지는 범죄의 새 그림을 그려보고, 대안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을 시도하려 한다.

'아웃팅'의 위험성

아웃팅은 한 개인의 성적지향을 동의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나 알려지는 것을 의미하며, 그동안 커밍아웃과 나란히 배열되거나 때로 반대의 개념으로써 알려져 왔다. 미국 70년대 동성애자 운동의 경우 아웃팅을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드러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성지향을 숨기기로 한 사람들을 공개하기도 하는 등 정치적 운동의 한 전술로 쓰여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런 의도적이고 정치적인 아웃팅이 성소수자 개개인에게 미쳤던 영향이 너무나 협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결국 이 운동은 실패한다.)

여기서는 '아웃팅'을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한 부분으로 이야기하려 한다. 지난 2004년 10월 레즈비언청소년이라는 성정체성을 빌미로 학교와 가족에게 밝히겠다고 협박한 아웃팅 범죄 가해자가 구속된 사례가 있었다. 그는 상대가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킬 수 없음을 이용해 성폭행까지 가했다고 해 그 충격은 더하다. 9) 상담을 통해 접수되고 있는 피해사례¹⁰⁾들을 보더라도 법률, 의료적 도움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아웃팅에 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전인데 반에 피해정도는 이미 도를 지나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아웃팅이 이번 사건처럼 악의 - 신변노출, 금전요구, 공갈협박 등 - 에 의한 경우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주변 친구들과 대화하는 도중에도 커뮤니티를 찾아가는 과정에서도 심지어 커뮤니티 내에서 다른 성소수자들을 만나는 경우에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극한 상황의 경우 상대가 혐오범죄의 희생자가 되거나 고용기회가 박탈되는 등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9) 여성주의 저널 '일다' <동성애자 겨냥한 범죄 대응책 시급 2004. 10. 4>

10) 단체에 접수된 사례와 성소수자 웹사이트 이용자들의 상담을 주로 인용하였다.

이하에서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유형 및 현행법 상의 법률 적용을 검토하고, 피해구제 절차에 대해 살펴보자 한다.

피해유형

(1) 성소수자들의 성지향을 동의없이 제3자에게 알린 경우

(1)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자신의 성정체성을 알린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논란이 될 수 있다.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와 그의 도덕적, 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의미한다. 냉전 이데올로기가 뿌리깊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듯이,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 사회적 배경 및 가치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그러한 점에서, 아직 우리 사회는 '동성애'에 대한 수용의 폭의 좁기에(현실적으로, 동성애라는 성적지향이 드러날 경우, 폭력과 놀림, 부당한 대우와 불쾌한 시선 및 언행들을 경험하게 된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신의 성정체성이 밝혀진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2) 명예훼손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책임으로 나누어 고려해 볼 수 있다.

① 우선, 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뿐 아니라 진실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 '공연성'은 다수인에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이상 인정된다. 예를 들어 친구 1인에게 '갑'이 동성애자임을 알린 경우 비록 다수에게 알린 것은 아니지만 그 친구에게 알림으로써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갑'의 친구에게 '갑'이 동성애자임을 밝힌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 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② 형사상 책임을 묻는 이외에 명예훼손을 이유로 민사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역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어야 한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아웃팅을 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돈을 요구하는 경우

<사례1, 동성애자인권연대 방문 상담사례 >

2000년 11월에 처음 만난 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후 계속 협박을 당하고 있음. 가해자는 사업을 하다 잘 안되고 있는 상황으로 내담자에게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게 되었다.'며 자기 신변의 모든 일들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상황. 내담자 누나가 미국 LA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으로 찾아가 모든 사실을 말하겠다고 하는 상황. 또 직장상사 뿐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있음. 2003년 11월부터 협박이 시작되었으며, 심지어 내담자 집에까지 찾아와 CD와 수첩을 훔쳐 가서 CD에 담겨있는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해 일상생활 자체가 안됨. 내담자가 첫 상담을 한 후 가해자는 직장상사를 찾아가 아웃팅시킴. 다행히 직장상사는 업무에 피해가 없다면 개인사생활로 생각해 신경쓰지 않는다고 말함.

<사례2. 동성애자인권연대 전화 상담사례>

약 1개월 정도 교제중인 사람과 동거를 하였음. 상대방은 인터넷으로 가구를 구입해 내담자 집에 들여놓음. 이 비용을 1:1 비율로 180만원 정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과 헤어지자 집에 있는 가구를 빼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임. 돈을 지불한 근거자료는 없음. 한번은 새벽에 집에 찾아와 쫓아내려다 실랑이 끝에 한 대 때렸고, 상대방이 돌을 던져 창문을 깨려했지만 깨지는 못함. 밖에 나와서도 실랑이는 계속되었고, 결국 경찰서까지 동행해 진술서를 쓰고 나옴. 상대방은 경찰을 대동해 가구를 다음날 빼겠다고 하면서 폭행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상황임.

<사례2>의 경우 금전대차 관계가 발생했는데, 이는 혼한 상담사례 중 하나이다. 한국 사회의 경우 동거커플간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한 판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¹¹⁾, 입증서류를 잘 정리해 두어야 한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차용증, 확인서, 당사자들의 관계를 잘 아는 사람의 진술이 없으면 금전대차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금전문제가 발생할 경우 차용증을 받아두거나, 가계부를 잘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상대가 가구를 원하다하더라도, 경찰은 수색영장 없이 집주인 명의의 집에 들어와 가구를 빼 수 없다. 가구인도소송(민사)에서 상대가 승소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11) 인천지방법원 2004년 7월27일 여성인 원고 A(45)씨가 20여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여성 피고 B(47)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우리사회의 혼인이라 함은 일부일처제를 전제로 하는 남여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의미한다"며 "동성간에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 하더라도 사회관념상이나 가족질서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동성간의 동거 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해 법률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다"며 "원고가 청구한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을 가사소송 및 가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04.7.28)

① 형사상 책임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500만 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4조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5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고지된 해악에는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정조, 업무, 신용에 대한 것 등이 포함된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우리사회에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감수해야 할 차별과 부당함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이상, 직장에 알린다거나 구체적으로 제3자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다.

② 민사상 책임

형법에 해당할 정도의 협박이 성립된다면 위 민법 제 750조의 위법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한다.

<사례3. 동성애자인권연대 전화 상담사례>

내담자 A씨는 게이 웹사이트에 구인광고란에 올라온 사람과 만났고 성관계를 가졌다. 하지만 상대가 성관계 후 성추행이라고 육박지르며 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50만원 정도는 주었는데, 재차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두렵다고 함.

<사례4, 동성애자인권연대 방문 상담사례>

내담자 B씨는 5년전 사우나에서 만나 교제를 유지해온 애인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2달전 헤어지자고 말한 후 스토킹 행위가 이어오고 있다. 구의동에 살고 있던 집도 상대가 모르게 잠실쪽으로 방을 구해 이전했지만, 그 사람이 잠실에 있는 주차장을 다 뒤져서 이전한 집을 찾아냈다. 출근하는 아침마다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B씨는 두려운 나머지 방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게 검은색 천으로 막아 논 상태이다. 방문한 날에는 5000만원을 갚으라고 협박하기 시작함. 서로 폭력이 오가기도 했다. 현재 개인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공포스럽고, 이 생활이 계속되면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다. 가족과 직장에 알려질까 두려워 점을 보기도 했다.

① 형사상 책임

형법

제350조 (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2조 (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공갈이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포심을 갖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웃팅을 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돈을 요구하고, 성소수자가 그에 대한 두려움으로 돈을 준 경우에는 공갈죄에 해당된다.

② 민사상 책임

공갈죄가 성립되면, 민사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한다.

<사례4>의 경우 협박과 금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가 충분하다. 하

지만, 스토킹에 대한 법률이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다. 무엇보다, 상대하고 협박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와 진술이 필요하다.

(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파면 등 징계를 받은 경우¹²⁾

국가인권위원회 30조 제2항에서 성지향을 이유로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외의 금품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에 있어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 33조 제 1항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근로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성지향을 이유로 파면 등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이에 대해서는 법원에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라) 기타

- 아웃팅의 근거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통화내역을 엿듣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 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 제3항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1.12.29.]

12)본 자료집 '노동권'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언급하였으며, 여기서는 법률적 검토만을 하고 있다.

제3자가 전화 내용이나 대화를 녹음하면, 위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단, 대화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아웃팅에 사용하기 위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장면 촬영하거나, 촬영한 것을 인터넷에 올린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2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구제방법

가. 형사 고소

(1) 형사상 처벌이 가능한 행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다. 고소는 피해 사실과 처벌의 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하는 것인데, 구두로 할 수 있으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다. 고소 사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경찰이 1차 조사를 한 후, 검찰이 최종 조사를 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이 고소사건에 대하여 기소(법원에 재판청구하는 것)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고소인에게 불기소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는데, 고소인은 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항고 사건은 고등검찰청이 담당하는데, 항고장 접수는 불

기소 결정을 한 지방검찰청에 하면 된다. 한편, 이 항고에 대하여도 기각을 하면 30일 이내에 재항고를 할 수 있는데, 재항고건은 검찰청장이 담당하나 재항고장 접수는 기각결정을 한 고등검찰청에 한다. 한편, 검찰총장이 재항고에 대하여도 기각결정을 하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 헌법소원은, 재항고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주의할 점은, 고소 사건이 수사 기관 내부에서 '진정' 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기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소장을 접수할 때, 반드시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여, 진정건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피해 사실과 처벌의 의사표시를 수사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데, 이 때는 고소가 아니라 '고발'이 된다. 고발인도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으나, 헌법소원은 할 수 없다.

(3) 문제는, 피해자들이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들의 비우호적인 태도 또는 아웃팅이 염려되어 고소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사기관은 동성애에 대한 편견없이 아웃팅이 되지 않도록 수사를 하여야 하며, 만약 수사기관이 동성애를 이유로 모독을 하거나 공연히 제3자에게 알리는 등으로 동성애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다.

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법원에 제기한다. 피해자 또는 가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기하면 된다.